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당내경선에서 비정규학력 게재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비정규학력 기재)”도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② (생략) ¹⁾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 ²⁾ 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생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1)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0조제1항·제2항).

또한,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에는 학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64조 제1항).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의 학력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

- 2)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
- 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첨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³⁾

그런데,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비정규학력⁴⁾과 같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 당선자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당내 경선에서 유의미하게 당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가 당선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⁵⁾ 정규학력과 관련된 비정규학력 기재가 당내경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로 보는 비정규학력 게재를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서도 동일하게 허위사실로 봄으로써 당내경선에서도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3) 대법원 2006.3.10.선고 2005도6316, 대법원 2007.9.20.선고 2007도5953

4) 법원에서 정규학력 외의 학력(비정규학력) 기재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는 “00대학교 00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대법원 2005도6316)”, “00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00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서울고법 2016노3474)”, “00대 00대학원 총동문회 이사·00대 00대학원 총동문회 이사(서울고법 98노2589)”, “아프리카주의 시에라리온 공화국에 있는 시에라리온 대학교 경영학과를 원격과정으로 졸업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명인 원격과정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립 LEONE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영학과 4년 졸업이라고 기재한 사례(대법원 2003도7058)” 등이 있음.

5) 황남주·신정섭,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당선자 결정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22권 제3호(2023), p.57.

학교교육제도상의 정규학력(이에 준하는 외국 학력 포함)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당 내부의 선거로서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와는 그 성격 및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⁶⁾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의 학력 게재 방법을 공직선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정당의 내부적인 절차이면서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므로 당내경선의 제한 수준을 공직선거의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6) 공직선거는 국민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당선자의 임기와 효력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나,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당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선거로서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당 내부 규정(당헌·당규)에 기재되어 있음.

7) 선거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554호) 및 해당 검토보고서 참조.